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8월 1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클래식아세안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2. 7.13

3. 정정사유
-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

4. 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6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③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__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업무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④신탁업자는__감시업무, (추가)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	③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__업무수탁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업무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④신탁업자는__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7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판매회사가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8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)	제8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)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.	제8조(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)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,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권(법 제189조제1항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, 이하 “수익증권” 이라 한다)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.
제13조(수익권의 분할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
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	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(“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1.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.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(“실질수익자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,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⑤(생략)	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.)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, 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.)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(이하 “수익증권고객계좌부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1.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.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(삭제)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④(현행과 같음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7조(수익증권의 양도)	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.	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,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.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18조(수익자명부)	제18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1. 실질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	제18조(수익자명부)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전자우편 주소 2.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(“ 실질수익자명부”라 한다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. ⑧(생략)	자통신 주소 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(삭제) ⑦(현행과 같음)
제19조(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)	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__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.	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__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.
제21조(환매청구 및 방법 등)	⑤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	(삭제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야 한다.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	(삭 제)
제22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.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__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.	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삭 제)부터__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(삭 제)
제24조(수익증권의 일부환매)	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,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당 종류의 수익증권을 교부한다.	(삭 제)
제26조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.	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제29조(수익자총회의 소집)	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__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	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__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집합투자업자__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	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__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제31조(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)	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	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제34조 (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)	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(消却)하여야 한다.	(삭 제)
제36조(투자대상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추가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
제38조(운용 제한)	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	(삭 제)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. 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	
제39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 포함)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(추 가)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	②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 포함)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제40조(투자신탁보수)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제41조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	②제1항에서 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.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	②제1항에서 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. 증권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
제42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(추 가)	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
제45조(상환금 등의 지급)	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48조(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대차대조표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재무상태표
제50조(투자신탁의 합병)	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	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제51조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	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생 후 지체 없이__통보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추 가)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,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(추 가)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	생 후 지체 없이__통보하여야 한다.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 5.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.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.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(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야 한다. 다만, (추 가)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(추 가)	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(삭제)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부칙	추 가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. (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)